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6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의원)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26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¹⁾에 따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임.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모여서 만든 단체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²⁾.

개정안을 통해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X)의원안에 따라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2.1억원(연평균 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사용자 또는 향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